신규 해외석탄발전
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

2021. 9. 24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Ⅰ. 도입배경 1

Ⅱ. 해외동향 2

Ⅲ. 가이드라인 내용 3

1. 적용기관 및 공적금융지원의 개념 3

2. 중단 대상사업의 범위 3

Ⅳ. 향후 계획 및 시행일 4

Ⅰ 도입 배경

□ 한국은 **기후정상회의**를 계기로 **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전면 중단을 선언**[*]('21.4)

* "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입니다."

- 기후정상회의 시 VIP 연설문 일부 -

○ 이러한 **중단선언은** 기후변화 대응·그린뉴딜 가치 실현 등을 위한 **정책적 필요성, 국제사회 요구*** 등을 **고려**하여 **결정**하였으며,

* UN사무총장, OECD 회원국에 대해 '21년 내 '석탄발전 중단'을 선언하고, '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단계적으로 폐지 요청('21.3월)

○ 중단선언 이후 이루어진 **한·미 정상회담**('21.5), **P4G 정상회의**('21.5), **G7 정상회의**('21.6) 등 **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**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**해외석탄발전 중단관련 논의를 선도**

□ 한편,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**중단선언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** 산업계 등 **현장에서의 혼선 방지**를 위해 **정부 합동 가이드라인**을 **마련하기로 결정**('21.5)

○ 제 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시 **중단 선언의 취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전달**하기 위한 **후속 가이드라인 마련 결정**

○ 후속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**타국사례, OECD 등 국제기구 논의동향 등을** 감안하여 **관계 부처 간 실무협의 진행('21.5~7월)**

☞ **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 취지를 구체화**하면서,
현장의 의견도 함께 수렴· 반영하여 **금번 가이드라인을 마련**

Ⅱ 해외 동향

□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 등 **국제적인 석탄 발전 투자 중단 흐름이 강화되는 추세**

○ **기존에는 개발은행, 수출신용기관*(ECA) 중심**으로 해외석탄 발전 공적금융지원 중단 선언을 해왔으나,

* G20 및 OECD 총 41개국 중 11개국 중단 선언(영국, 미국, 독일, 프랑스, 캐나다, 브라질, 덴마크, 핀란드, 노르웨이, 스웨덴, 아이슬란드)

○ 최근 P4G 등 **각종 다자회의*** 계기 **각 국 정부차원****에서도 해외 석탄화력발전 **공적금융지원 중단 검토**

* **P4G 정상회의**(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적 금융 중단을 위한 방법 모색, '21.5月), **유럽 7개국 재무장관회의**(화석연료 관련 수출금융 지원 중단 선언, '21.4月)

** 한국, 영국, 미국, 독일, 프랑스, 캐나다, 일본, 이탈리아, 덴마크, 핀란드, 아이슬란드, 네덜란드, 스웨덴, 스페인 포함 총 14개국은 다자회의 계기 중단 선언에 참여

- 美 바이든 행정부의 **파리 기후변화 협약 재가입**('21.1), 세계 40여국이 참석한 **기후 정상회의('21.4)** 등 계기로 **논의 가속화**

○ 세계은행, 아시아개발은행 등 **국제 금융기관** 및 모건스탠리, 골드만삭스 등 100여개의 **민간 금융회사도 석탄발전 투자 중단 발표**

□ G7,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**해외석탄발전 투자 중단 선언의 구체적 실현을** 위한 **OECD 규약 개정** 논의 등도 함께 진행 중

○ G7은 **정상회의** 공동성명('21.6)을 통해 각 국 정부는 '21년 연내 **석탄 화력발전 신규지원을 종료**할 것임을 선언하였으며,

○ **EU는 이사회**(21.1월)를 통해 제3국 화석연료 사업 투자에 대한 **기후 및 에너지 외교**('Climate and Energy Diplomacy')에 합의*

* **(주요내용)** 제 3국 신규 석탄사업에 대한 즉각적 금융 중단 등 탄소배출저감이 없는 석탄 에너지원 활용 단계적 폐지

-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 등 **국제적 논의가 반영된 OECD 석탄양해 개정안** 발의('21.4)

Ⅲ 가이드라인 내용

◈ **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**

❶ **정부** 및 全 **공공기관 적용 + 민간기관도 유도해 나갈 계획**

❷ 공적 금융지원은 **ODA, 수출금융, 투자 등을 포괄**하여 넓게 정의

❸ 신규 프로젝트는 **원칙적으로 중단하되,** 추후 **국제적 합의내용을 적용**

❹ **旣 승인사업**에 대한 **필수 부수거래** 등 지원은 가능

1. 가이드라인 적용기관 및 공적 금융지원의 개념

□ 해당 가이드라인은 **중앙정부 및 지자체와**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**모든 공공기관에 적용**

○ 공공부문이 **선도적**으로 **신규 해외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정책적 신호를 명확**하게 하기 위함

○ 한편, **정부가 지분을 보유**하며 이사회 등 **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**에 대해서도 **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**으로 **유도해 나갈 계획**

□ 동 가이드라인에서 **공적 금융지원이란 정부·지자체 및 공공기관**이 수행하는 **공적개발원조**(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), **수출금융**(Export Finance), **투자**(Investment) 등을 **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**

2. 중단 대상사업의 범위

□ **신규 해외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하되,** 그 外 **추가사항**에 대해서는 **국제적 합의내용을 적용**

○ 현재 **OECD 석탄양해 관련한 개정 논의가 진행 중***으로 **추후 참가국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사항**과 **동일한 수준**으로 **국내에도 적용**

* EU 개정안 제출('21.4)→OECD 참가국 1차 회의(6.15~16)→2차 회의(9.15~16)

< ※참고 : 'OECD 석탄양해' 개정 관련 EU측 공동발의 제안案(요약) >

◇ **(원칙)** 다음과 같은 목적의 수출신용과 구속성 원조 즉각 중단

- **신규 석탄발전 사업 및 설비**에 대한 **금융지원**
- ①**대기 또는 수질오염 저감** 목적, ②**사용 연한/발전량을 확대**하지 않는다는 요건을 未충족하는 **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한 설비공급 금융지원**

◇ **(예외) 기후변화저감 기술인 CCS**(탄소포집·저장)**를** 적용한 **신규 및 기존 사업은 지원 가능**

□ 한편, **상대국과와의 경제·외교적 신뢰관계, 사업 진행상황** 등을 고려하여 旣 **승인사업에 대한** 지원은 가능하며,

○ **지원 가능한** 범위는 ①**금융약정 이행** 및 ②사업에 **수반되는 필수 부수거래*** **해당**

* 이행성 보증(선수금 환급보증, 계약이행, 하자보수 등), 스왑, 신용장 발급 등

Ⅳ 향후 계획 및 시행일

□ **(향후계획)** 「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」 **신속한 배포 및 홍보**를 통해 **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,**

○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**국제논의에 적극 참여**하여 참가국 회의에서 **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** 추진

□ **(시행일)** 동 가이드라인은 **'21년 10. 1일 부**로 **적용**